

[136]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

○ 사업개요

사업명	서울장학재단 차세대 장학시스템 구축	사업기관	평생교육국
		부서	교육지원정책과
사업기간	2023/04 ~ 2023/09(6개월)	담당자	김선미
요청사업비	688,832 천원	전화번호	02-2133-3916
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학사업 업무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자와 장학생의 편의성을 강화하고,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차세대 장학시스템 구축 ○ 장학사업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유연한 대응체계를 포함하는 업무 재설계 및 시스템 확장성,유연성 확보 ○ 장학생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디바이스 호환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,보안 등 안전한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		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장학재단 차세대 장학시스템 신규구축 ○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PC 개인정보 및 보안강화 ○ 정보화사업 감리 		

○ 검토결과

(단위:천원)

회계구분	예산구분	요구내역	요구액	검토제외	심사대상액	심사결과	증감액
		합 계	688,832	98,810	590,022	537,726	△52,296
일반회계	출연금	응용SW 신규개발	323,065	0	323,065	320,233	△2,832
일반회계	출연금	HW구매	101,640	0	101,640	53,286	△48,354
일반회계	출연금	상용SW구매	96,326	0	96,326	96,282	△44
일반회계	출연금	감리비	68,991	0	68,991	67,925	△1,066
일반회계	출연금	직접경비등 기타비용	98,810	98,810	0	0	△0

○ 총평

심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예산조정
심사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효과적인 장학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차세대 장학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HW 등 인프라를 구매하여 구축하는 사업이었으나 클라우드 이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조정하였음 ○ 각 전문분야 기술검토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반영하기 바람
예산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적합성 : 조정(△ 52,296천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용SW 신규개발 · 「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」에 따라 기능점수 및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- HW구매 · 클라우드 이용으로 과업 변경되어 HW구매비 감액, 클라우드 이용료로 산정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용SW구매 ·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」 제9조(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)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- 감리비 · 「정보시스템 감리기준」 제4조(감리대가 산정)에 따라 산정 -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 ·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검토 제외
전문분야 기술검토	개인정보보호, 민간.공공클라우드 활용
기술성 등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성 및 기타 -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
기술검토결과	<p>[개인정보보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명 : 서울장학재단 차세대 장학시스템 구축 - 주관부서 : 서울장학재단(재단 고유사업) - 사업유형 : 신규 - 개인정보 취급여부 : ○ - 검토내용 · 개인을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므로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·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후 대시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위탁, 3자제공 내역 등과 함께 공개하여야 함 ·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관리·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여야 함 · '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(개인정보보호위원회)'에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함(기 등록의 경우 변경사항 반영 필요)
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	N
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	-
감리구분	감리대상 (사유 :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)
사전협의	제외대상 (사유 :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지침 적용범위(기관)가 아님)